

# 참고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p>3. 항만</p> <p>가. 갑문</p> <p>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p> <p>다. 계류시설</p>	<p>갑문시설</p> <p>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p> <p>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 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p> <p>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p>	<p>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p> <p>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p> <p>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p> <p>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p> <p>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p> <p>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p>
<p>4. 댐</p>	<p>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p>	<p>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p>
<p>5. 건축물</p> <p>가. 공동주택</p> <p>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p>	<p>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p> <p>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p> <p>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p>	<p>16층 이상의 공동주택</p> <p>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p> <p>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p>

		<p>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p> <p>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p>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과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 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 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

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사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다. 방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 구조로 된 시설
라. 육교	보도육교
마.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바.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터널·옹벽·항만·댐·하천·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 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나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성능평가대상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나. 철도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
3. 항만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4. 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5. 건축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6. 하천 가. 하구둑 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7. 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8. 옹벽 및 절토사면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비고

-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 5. "연안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말한다.
-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 위 표의 광역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용수전용댐은 제외한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참고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11.22.>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같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턴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중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고3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구재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참고4

# 안전 점검 등 목적 및 수행 방법

점검 구분	수행 방법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b>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li> <li>-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li> <li>-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i> </ul> </li> </ul>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b>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b>하여야 한다.</li> <li>-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b>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b> 관리주체에서 대가를 반영하여 해당 부위에 대하여 <b>안전성평가 실시</b></li> <li>-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li> </ul> </li> </ul>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li> <li>-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li> <li>-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li> <li>-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b>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b>, 필요한 경우에는 <b>시설물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b></li> <li>-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b>보수·보강방법 제시</b></li> </ul>
긴급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li> </ul>
성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li> </ul>

## 참고5 취약시설물(중대한결함 등, D·E등급) 안전관리

### □ 중대한결함 등

- (중대한결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
- (중대한결함 外)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

### □ 처리절차

<p>중대한결함등 발견 (법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 ⇒ 관리주체 및 구청장에게 <b>통보</b></li> <li>▪ 관리주체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부장관에게 <b>즉시 통보</b></li> </ul>
<p>(긴급) 안전 조치 (법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한 조치 필요 ⇒ <u>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u></li> <li>-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 ⇒ <u>위험표지 설치, 방송·인터넷 등으로 주민 공지</u> *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즉시 FMS 입력 후 제출</li> <li>- 긴급한 안전조치 명령(구청장) ⇒ 안전조치 이행 의무</li> <li>-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 통보 * 안전조치 30일 이내 FMS 입력 후 제출</li> <li>-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b>공고</b></li> </ul> </li> <li>▪ 용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한 조치 필요시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 이행 명령</li> <li>-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안전조치 대행 / 「행정대집행법」 준용 * 관리주체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 긴급 또는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조치 후 통보</li> </ul> </li> </ul>
<p>보 수 · 보 강 (법 제2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조제6항(긴급안전점검)의 조치명령이나 제23조제1항(중대한결함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이행</li> <li>-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 지정 결과(제16조)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u>위험표지 설치, 방송·인터넷 등으로 주민 공지</u></li> <li>- 2년 이내 조치계획 및 착수,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조치 완료</li> <li>-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 통보 * 조치착수 및 조치완료 30일 이내 FMS 입력 후 제출</li> </ul> </li> <li>▪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및 시정 명령</li> </ul> </li> </ul>

## □ 안전취약시설물의 범위

구분	내용
<b>중 대 한 결 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기초의 세굴</li> <li>· 교량교각의 부등침하</li> <li>· 교량받침의 파손</li> <li>· 터널지반의 부등침하</li> <li>·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li> <li>· 댐의 파이핑(piping, 흙·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 및 구조적 균열</li> <li>·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li> <li>·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li> <li>·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li> <li>·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li> <li>·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행규칙 [별표 3]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참고1]</li> </ul>
<b>중 대 한 결 함 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li> <li>·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li> <li>·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li> <li>·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li> </ul>

##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시설물 명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가.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나. 주형(교량보, 거더; girder)의 균열 심화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라. 부재 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마.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바.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콘크리트 속의 강재나 강철로 만든 줄)의 손상 사. 교대·교각의 균열 발생
2. 터널	가. 벽체균열의 심화 및 탈락 나. 복공부위의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수문의 작동 불량
4. 댐	가. 댐체, 여수로, 기초 및 양쪽 기슭부(양안부)의 누수, 균열 및 변형 나. 수문의 작동불량 다. 삭제 <2022. 9. 16.>
5. 상수도	가.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나.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6. 건축물	가. 주요 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 심화 나.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다.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7. 항만	가. 갑문시설 중 문짝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나. 갑문의 물을 채우거나 빼는 송배수로 시설의 부식 노후화 다.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시설 파손 및 결함 라. 케이슨(Caisson: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나 원통 모양 등의 구조물) 구조물의 파손 마. 안벽(부두벽)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변위 및 침하

## 참고6 위험표지

### ■ 위험표지 (시행령 제21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위험표지	위험표지 설치 요령
<div data-bbox="220 651 651 101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f00;">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weight: bold;">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p> <p>「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문의: OO시청·군청·구청, T: (012) 345-6789 OO 시장·군수·구청장</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표지판: 1.2m(가로) × 1m(세로)</li> <li>나. 기둥: 지름 10cm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li> </ol> </li> <li>2.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li> <li>3. 색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랑</li> <li>나. 글씨: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한다.</li> <li>다. 기둥: 노랑색</li> <li>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ol> </li> </ol>

## 참고7 관련 서류의 종류 및 제출 시기

### ■ 설계도서 ·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구분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1. 설계도서 등	가. 준공 도면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2. 시설물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3. 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 ■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서류의 종류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1. 설계도서 등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시설물관리대장		
3. 감리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비고

"설계도서 등"이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말한

## 참고8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관련 책임기술자 등 자격

### 1.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5]

- (책임기술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1항(안전점검), 제12조제1항·제2항(정밀안전진단), 제13조제1항(긴급안전점검) 또는 제40조제1항(성능평가)에 따라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
- (자격요건)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 시스템”)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구 분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 토목 또는 안전관리(전문 건설 안전) 직무분야 <b>중급기술인 이상</b>	·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토목 또는 안전관리(전문 건설 안전) 직무분야 <b>고급기술인 이상</b>	·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정밀안전진단	· 토목 직무분야 <b>특급기술인 이상</b>	· 해당분야(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 건축 또는 안전관리(전문 건설 안전) 직무분야 <b>중급기술인 이상</b> · 건축사	·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건축 또는 안전관리(전문 건설 안전) 직무분야 <b>고급기술인 이상</b> · 건축사(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을 것)	·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정밀안전진단	· 건축 직무분야 <b>특급기술인 이상</b> · 건축사(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을 것)	· 해당분야(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성 능 평 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것	·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2. 참여기술자의 자격 [시행령 제9조제2항]

-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 (자격요건) ①+②+③ 모두

- ①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 ②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③ FMS 시스템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 3. 교육훈련 등 [시행규칙 제10조]

- (교육이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신교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시설물안전법 개정, '18.1.18.)

- (교육기관)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 ③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교육시간)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 4. 기술자 등록 [시행규칙 제10조의2]

- (등록방법)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FMS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출서류)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② 국가기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 ③ 교육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이수증 등)

## 5.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인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소속 직원일 것
- (자격)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일 것
- (교육)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
- (등록) FMS 시스템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할 것

## 참고9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1. 4. 20.>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 1. 위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p>가. 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b>시설물관리계획</b>을 수립하지 않거나 <u>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u></p> <p>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p> <p>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p> <p>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p>	법 제67조 제3항제1호	100 3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나. 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b>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b></p> <p>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p> <p>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p> <p>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p>	법 제67조 제3항제2호	100 3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b>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b></p>	법 제67조 제3항제3호	3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b>안전점검</b>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p> <p>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p> <p>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p>	법 제67조 제2항제1호	300 500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b>정밀 안전진단</b>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p> <p>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p>	법 제67조 제1항제1호	1,000 1,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000	
바. <b>법 제12조제3항</b> 에 따라 <b>내진성능 평가</b>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사. <b>법 제13조제1항</b> 에 따른 <b>긴급안전점검</b> 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2호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 <b>법 제13조제7항</b> 에 따라 <b>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b>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4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 <b>법 제17조제1항</b> 또는 <b>제4항</b> 에 따라 <b>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b> 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2호의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차. <b>법 제17조제2항제2호</b> ( <b>법 제40조제5항</b> 및 <b>제41조제2항</b>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b>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b> 한 경우	<b>법 제67조 제2항제3호</b>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b>제13조제4항</b> ( <b>법 제40조제5항</b> 및 <b>제41조제2항</b> 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b>제28조제7항</b> 및 <b>제29조제4항</b>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b>매우 불량</b> 으로 판단한 경우		1,000	
2) <b>제13조제4항</b> 에 따라 <b>불량</b> 으로 판단한 경우		500	
카. <b>법 제17조제2항제3호</b> ( <b>법 제40조제5항</b>	법 제67조	500	국토교통부장관

<p>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u>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u></p>	제3항제6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타. <b>법 제18조제2항</b>에 따른 <u>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u></p>	법 제67조 제3항제7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p>파. <b>법 제18조제3항</b>을 위반하여 <u>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u></p>	법 제67조 제2항제3호의2		국토교통부장관
<p>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p>		300	
<p>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p>		500	
<p>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p>		1000	
<p>하. <b>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b>의 규정에 따른 <u>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u></p>	<b>법 제67조 제2항제4호</b>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거. <b>법 제23조제3항</b>을 위반하여 <u>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u></p>	법 제67조 제3항제8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너. <b>법 제24조제3항</b>을 위반하여 <u>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u></p>	법 제67조 제3항제9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p>		50	
<p>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p>		100	
<p>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p>		200	
<p>더. <b>법 제25조제1항</b>에 따라 <u>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u></p>	법 제67조 제2항제5호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러.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u>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u>	법 제67조 제2항제6호	1,000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시장·군수·구청장
머.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u>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u>	법 제67조 제3항제10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u>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u>	법 제67조 제3항제11호		시·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00	
서.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u>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u>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12호	200	시·도지사
어.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u>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u>	법 제67조 제3항제13호	200	시·도지사
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u>대행실적</u> 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14호	500	시·도지사
쳐. 법 제38조에 따른 <u>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u>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15호	200	시·도지사
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u>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u>	법 제67조 제2항제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시장·군수·구청장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터. <b>법 제40조제4항</b> 에 따른 <b>성능평가 결과보고서</b>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6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퍼. <b>법 제41조제1항</b> 에 따라 <b>유지관리 결과보고서</b>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허. 삭제 <2020. 12. 1.>			
고. <b>법 제59조제3항</b> 을 위반하여 <b>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b>	법 제67조제3항제19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비고

-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및 커목부터 퍼목까지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표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 및 머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국토안전관리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표 제2호고목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한다.